

공 시 송 달 공 고

서울특별시 노원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1차 시정명령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.

2026. 6. 9.



1. 공고내용 :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차 시정명령
2. 공고기간 : 2026. 6. 9. ~ 2026. 6. 23.
3. 공고방법 : 노원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청게시판
4. 공고대상 : 아래 내역 참조
5. 처분근거
 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
 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0조 제1항
6. 기타사항
 - 불법행위 1차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원구청 푸른도시과(☎02-2116-0561)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,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또한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공 시 송 달 내 역

▣ 불법행위에 따른 1차 시정명령 통보

| 행위자 | 불 법 행 위 | | | | | | 비고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|
| | 위 치 | 내 용 | 면 적(m ²) | 구 조 | 용 도 | 행위년도 | |
| 안*화 | 공릉동 **-** | 불법건축물 건축 | 18 | 컨테이너 | 창고 | 2026 | |